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분석

이종걸 의원실

결론: 개정법안에 대한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의미있는 반대”는 없음

검토보고서에 소개된 금융위원회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공인인증 업체)의 견해는 다음과 같음.

1. 금융위원회 입장(보고서 제 7 면):

“개정안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안전성을 가진 인증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13년간 사용되어 온 공인인증제도를 당장에 철폐하는 경우 금융회사 및 이용자들의 혼란과 전자금융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있고, 전자금융 인증체계 개편 관련 연구용역(6~9월)을 실시 중이므로 금년 하반기까지 충분히 검토 후 법 개정의 추진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그러나,

-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안전성을 가진 인증기술이 없는 상황”이라는 금융위 주장은 사실과 다름.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2011년에 발간한 “전자인증 가이드라인”은 공인인증서보다 더욱 안전한 인증수단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
- “공인인증제도를 당장에 철폐”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금융위 주장은, 이 법안 내용과는 무관함. 이 법안은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지 말자는 것이지, 공인인증제도를 ‘철폐’하자는 것이 아님.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는 금융회사는 계속 사용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 용역(인증체계 개편 관련 연구 용역)은 이 법안 채택 후 자율적, 점진적 변화가 업계에서 서서히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상시로 수행되면 될 것임. 이 법안 처리가 금융위 연구 용역 일정에 종속되어야 할 이유는 없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이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음(보고서, 7-8 면):

“개정안의 취지는 해킹 등으로 인한 취약점이 노출된 공인인증서의 ‘존폐’여부가 아닌, 금융위가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안된다는 것”

따라서, 금융위원회 입장은 사실과 다르거나, 이 법안과는 무관한 주장이거나, 이 법안 통과와 충분히 양립 가능한 주장이므로, 이 법안에 대하여 정부측의 “의미있는 반대”는 없는 상황임.

2. 공인인증 사업 수행 민간 업체(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의견

- 금융위원회(정부) 입장은 공인인증 영업을 수익사업으로 하는 민간 업체(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임. 따라서 공인인증 업체의 의견을 별도로 논할 필요는 없음.
- 민간 업체의 주장 중, (1)공인인증서가 창조 경제에 이바지했다, (2)인증수단을 다양화하면 더 많은 관리이슈와 해킹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보고서 각주 11)은 사실과 다름.
- 공인인증서 강요 때문에 오히려 국내의 여러 기발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전세계를 상대로 영업할 길이 막혀있음. 한국에서만 강행되는 “국내 공인” 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므로, 외국 고객은 결제 불가능.
- 인증수단을 한가지로 강제, 통일할 경우, 그 수단이 뚫리면 온국민이 ‘일거에’ 당하게 되므로 더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함.
- 인증수단 선택을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겨둔 선진 각국(미국, 영국, 유럽)의 경우, 그로 인한 혼란이나 불편이 생겼다는 사례는 없음. 오히려 한국보다 안전, 편리, 다양한 전자금융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이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 짓고 있음(보고서 제 8 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기술의 사용강제는 해킹 규모 등에 따라 국가 전체적인 문제를 야기하거나 보안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3. 금융위원회와 공인인증 사업 수행 민간 업체 간의 부적절한 관계

-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해주는 금융위원회 고위 관리(부이사관)는 퇴직 즉시 공인인증 사업 수행 민간 업체인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감사로 취업하여 3년간 10억여원을 받는 상황임.

“금융결제원 감사에 원중희씨 선임” - 중앙일보 2012.3.14 자 보도 <http://bit.ly/108F5M1>

“정부의 ‘공인인증서’ 집착은 ‘정경유착’과 ‘전관예우’ 때문?” 미디어뉴스 2013.6.20 자 보도 <http://bit.ly/13YWIPc>

4. 개정안이 채택되도 금융위원회는 ‘인증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할 권한을 여전히 보유함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본문 마지막 페이지(제 8 면)에 기재된 아래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일부 있음: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가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대하여만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인증방법과 관련한 세부 기준은 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는바,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인증방법에 대한 기준설정이 없는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한 여부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봄.”

- 현행 제 21 조 제 2 항은 금융위원회에게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기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기준을 제정할 권한을 이미 포괄적으로 부여하고 있음.
- ‘인증 방법’은 제 21 조 제 2 항이 말하는 “정보기술부문”에 당연히 포함되므로, ‘제 3 항’이 개정되어도 금융위원회는 ‘인증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할 권한을 여전히 ‘제 2 항’에 근거하여 보유함.
- 제 21 조 제 3 항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제 2 항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부여받은 기준 제정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정한 기술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것 뿐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 21 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① 생략</p> <p>② 금융기관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③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8 호의 공인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p>	<p>제 21 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①(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 ----- ----- ----- ----- -----</p> <p>③ 금융위원회는 전 항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특정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p>

“금융회사가 접근 매체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과 오승곤 과장(현행 공인인증제도 감독 관청 실무책임자)
(2013.6.13. 국회 유승희 미방위 간사 주최 공개토론회에서 발언)

한미 FTA 제 15.4 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거래 당사자가 그 거래를 위하여 적절한 인증방법을 상호 결정”할 수 있어야 함.

KAIST, 포항공대, 서울대 교수 등 300 여명, 지지서명

정부 정책의 '기술 중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기술 발달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이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

인터넷기업협회(네이버, 다음, SK 컴즈, 카카오 등 150 여개 국내 인터넷기업)도 공식지지서명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금지하는 이번 개정안이 한국 인터넷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현행 규제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개선의 시발점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전자인증 가이드라인”(2011.12 출간)

- 소프트웨어적 보안인증서(국내 공인인증서 99%에 해당) → Level 3 에 불과함
- 잠금장치 있는 OTP 생성기 → Level 4 (더 우수한 인증 수단)

개정법안은 특정 기술, 제품을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

- <http://choice.opennet.or.kr/info.php> 참조

2등급

LEVEL 2

일반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스마트카드 리더기 등



일반 OTP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스마트카드
리더기

3등급

LEVEL 3

USB · PC · 스마트폰 등에 저장된
인증서(국내 보급 공인인증서의
99% 이상)



공인인증서

4등급

LEVEL 4

잠금장치 있는 OTP 생성기, 프로세서가 내장된
별도의 하드웨어(USB 저장장치 아님) 등



잠금장치 있는
OTP 생성기

프로세서 내장
하드웨어